

**중산매곡 에일린의 뜰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案)**

# 중산매곡 에일린의 뜰 입주자 모집공고 (안)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공지역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9.26 입니다.(청약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은 판타지입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대상주택 미착용 아파트로 향후 주택시장 변동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나 청약시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제2호의3, 제3조, 제4호에 의거 '성년자', '세대',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 및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행방불명 등으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장인·장모·시부·시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시위·머리·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처녀 등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09.26.)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하오나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고)
-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5호, 제3조 분양권 등에 관한 적용례)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청사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봄(비분양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는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납입(실거래신고서 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기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시장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일반 및 특별공급 모두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투유(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및 KB국민은행(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 신청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사 실시합니다.(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5호,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청약순위 특별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원에 한하여 청약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에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을 대상으로 공급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제 기준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함
    -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가점제 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또한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나,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공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나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신청총합액(청약액·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양가족 판단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단,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소수점 이하는 절상함)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jm-elleen.co.kr>)에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행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행별 경쟁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양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요건을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여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시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 2항에 의거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나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지체 1년 이상 가입자 →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지체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나 청약시 선택하여 추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시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2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인이 당첨자발표일 이후 주택의 특별공급 중복신청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5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출하는 서류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주민등록표등 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서류,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 제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시어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거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외 자세한 사항은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급일정, 청약 신청방법 및 장소, 당첨자 발표일, 지정계약기간 안내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1순위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2순위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일정	2019.10.01.(수) (08:00 ~ 17:30)	2019.10.02.(수) (08:00 ~ 17:30)	2019.10.04.(금) (08:00 ~ 17:30)		2019.10.11.(금)	2019.10.22.(화) ~ 2019.10.24.(목) (10:00 ~ 16:00)
방법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개별조회(www.ap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방문계약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www.ap2you.com)</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li>-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KB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li> <li>-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li> <li>•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li> <li>-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li> <li>- PC : www.ap2you.com</li> <li>- 스마트폰 : APT2you 앱</li> </ul>	주택전시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5-13)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가능하며,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05.28. 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 공급내역 및 분양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과- 호(2019.09.26.)호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481-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7,160.5000 m<sup>2</sup>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건축물연면적 : 121,051.5899 m<sup>2</sup>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 / 지상 최고 23층, 아파트 11개동, 총 851세대 중 일반분양 214세대 [조합원 637세대, 특별공급분 90세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2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1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2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951대 (지하2층~지상1층 설치)

### 1.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기준)	타입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공급 세대수	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 면적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공급 면적						합계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인명 주택	2019000856(01)	59.9405	59A	59.9405	19.2042	79.1447	1.4979	27.5975	108.2401	31.5949	18	8	2	2	4	0	10	1
	2019000856(02)	59.9945	59A-1	59.9945	20.9547	80.9492	1.4993	27.6223	110.0708	31.6234	22	9	2	2	4	1	13	1
	2019000856(03)	59.9990	59B	59.9990	20.3146	80.3136	1.4994	27.6244	109.4374	31.6258	7	3	1	1	1	0	4	1
	2019000856(04)	84.9966	84A	84.9966	25.7205	110.7171	2.1241	39.1337	151.9749	44.8021	28	13	3	3	6	1	15	3
	2019000856(05)	84.9984	84A-1	84.9984	28.2654	113.2638	2.1241	39.1345	154.5224	44.8031	16	5	1	1	3	0	11	1
	2019000856(06)	84.9986	84B	84.9986	26.3665	111.3651	2.1241	39.1346	152.6238	44.8032	61	26	6	6	12	2	35	7
	2019000856(07)	84.9939	84B-1	84.9939	28.9257	113.9196	2.1240	39.1324	155.1760	44.8007	62	26	6	6	12	2	36	3
합 계											214	90	21	21	42	6	124	17

###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 주택형(m <sup>2</sup> )	59.9405	59.9945	59.9990	84.9966	84.9984	84.9986	84.9939
약식표기	59A	59A-1	59B	84A	84A-1	84B	84B-1

-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달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각 주택형별로 배정수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수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 층, 전기/기계실, 생활지원센터, 주민회의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함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상가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 각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 및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원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등으로 보증사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정례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II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본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분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고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방문 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포함)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먼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통해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특별공급, 일반공급 1,2순위 등)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당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이 취소되며, 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정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상 분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순위,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분양일정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당첨 취소 또는 계약이 취소를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A	59A-1	59B	84A	84A-1	84B	84B-1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85㎡이하 10%)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	1	1	1	1	0	2	2	8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0	0	0	1	0	2	2	5
	장애인	1	1	0	1	1	1	1	6
	중소기업근로자	0	0	0	0	0	1	0	1
	북한이탈주민	0	0	0	0	0	0	1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건설량의 10%)		2	2	1	3	1	6	6	21
신혼부부 특별공급 (85㎡이하 20%)	소득기준	우선공급(75%)	3	3	1	5	3	9	33
		일반공급(25%)	1	1	0	1	0	3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건설량의 3%)		0	1	0	1	0	2	2	6
합 계		8	9	3	13	5	26	26	90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특별공급 신청 및 당첨자 발표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결과 확인 방법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9.10.01.(화), 08:00 ~ 17:30 (주택전시관 : 10:00 ~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APT2you)</li> <li>•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능 경우에만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가능(신청 관련 서류 미비 자 접수 불가)</li> <li>• 중산매곡 예일린의 들의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li> <li>•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일 : 2019.10.11.(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및 사업주체 홈페이지</li> </ul>

-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해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를 허용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당첨자 선정일자와 시간을 인지하시어 당첨여부를 확인하여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추천하여 결정합니다. (일반 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

※ 청약전 반드시 과거 당첨사실 조회 요망

- 아파트 투유(www.ap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제외)

□ 계약체결일 : 2019.10.22.(화) ~ 2019.10.24.(목) (3일간,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li> <li>※ 특별공급 1회 제한 예외사항</li> <li>-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공급할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li> <li>가.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li> <li>나.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서 제46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임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함</li> <li>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li> <li>다.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예비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li>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자 (예)부·모·장인·장모·시부·시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등</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자 (예)아들·딸·사위·며느리·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등</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자 (예)전혼자녀 등</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각 청약통장에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li>■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울산광역시</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분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등·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당첨자 등호수 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신청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등·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등·호수를 결정함</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li> <li>• 특별공급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li> </ul>
예비 입주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 입주자를 선정</li> <li>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li> <li>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4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li> <li>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세대수로 전환함</li> </ol> </li> <li>•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등·호 및 미계약 등·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li> <li>※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동 순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함.</li> <li>•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li> <li>•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주택전시관)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li> </ul>

- 주택전세금 접수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 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편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한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특별공급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하며(APT2you, 홈페이지),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공급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 중 각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별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li> <li>• 추천기관</li> </ul>		
	구분	관련 법규	해당 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호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울산보훈지청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특징이 교부된 자	울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경상남도청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울산지방중소기업청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li> </ul>			
당첨자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확정자 및 예비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확정자 및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APT2you)을 하여야 함[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예비자 포함)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함.</li> <li>• 동일세대에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특별공급 포함)에 대하여 중복청약으로 동시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되어(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등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한함),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한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ul>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보호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추천 여부는 기관이 결정하고, 예비입주자 추천 시 예비입주자는 해당 주택형의 타 유형 특별공급 미달 시 당첨자로 확정 될 수 있으므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잔여세대는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우선공급 될 수 있습니다.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제건설량의 10% 이내 공급

구분	59A	59A-1	59B	84A	84A-1	84B	84B-1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건설량의 10%)	2	2	1	3	1	6	6	21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임야 포함)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임야 포함)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 (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li>※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li> <li>※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li> <li>※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li> <li>•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li>•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 특별공급은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기타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함</li> <li>※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정보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불가)</li> <li>※ 다자녀가구 배정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li> </ul> </li> <li>※ 재혼배우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입주자지속 가입자)의 세대별 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된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다자녀 특별공급시 자녀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단, 청약신청자와 세대분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가 인정되는 경우는 청약신청자와 재혼배우자 사이에서 재혼 후 태어난 자녀(직계비속, 친자녀)인 경우만 해당함)</li> </ul>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정 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자녀수(1)	40	5명 이상	40	• 자녀(태어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며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처우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등점차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이내 공급

구 분		59A	59A-1	59B	84A	84A-1	84B	84B-1	합 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85㎡이하 20%)	소득 기준	우선공급(75%)	3	3	1	5	3	9	33
	일반공급(25%)	1	1	0	1	0	3	3	9
합 계		4	4	1	6	3	12	12	42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에서 거주하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신혼부부 또는 혼인신로일부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를 말한다.) 이하인 자</li> <li>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li>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함</li> <li>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li> <li>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li> <li>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li> <li>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li> <li>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자</li> <li>※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자료)</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공급유형</th>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6">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th> </tr> <tr> <th>3인 이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td> <td>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td> <td>100% 이하</td> <td>5,401,814원</td> <td>6,165,202원</td> <td>6,699,865원</td> <td>7,348,891원</td> <td>7,997,917원</td> <td>8,646,943</td> </tr> <tr> <td>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20% 이하</td> <td>6,482,177원</td> <td>7,398,242원</td> <td>8,039,838원</td> <td>8,818,669원</td> <td>9,597,500원</td> <td>10,376,332</td> </tr> <tr> <td rowspan="2">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td> <td>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td> <td>100%초과~ 120%이하</td> <td>5,401,815원 ~ 6,482,177원</td> <td>6,165,203원 ~ 7,398,242원</td> <td>6,699,866원 ~ 8,039,838원</td> <td>7,348,892원 ~ 8,818,669원</td> <td>7,997,918원 ~ 9,597,500원</td> <td>8,646,944원 ~ 10,376,332원</td> </tr> <tr> <td>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20%초과~ 130%이하</td> <td>6,482,178원 ~ 7,022,358원</td> <td>7,398,243원 ~ 8,014,763원</td> <td>8,039,839원 ~ 8,709,825원</td> <td>8,818,670원 ~ 9,553,558원</td> <td>9,597,501원 ~ 10,397,292원</td> <td>10,376,333원 ~ 11,241,026원</td> </tr> </tbody> </table>									공급유형	구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120%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30%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공급유형	구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120%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30%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li> <li>-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li> <li>※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자</li> <li>-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li> <li>-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li> <li>※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li> <li>※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li> </ul>																																																								



	<p>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p> <p>※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 수를 포함)</p>
<b>당첨자 선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 우선공급: 대상 주택 수의 75%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이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함</li> <li>• 상기 대상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해당 혼인기간에 자녀를 출산임신중이거나 임명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li> <li>-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li> <li>-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li> </ul> </li> <li>•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공급(기준소득) 75% : 소득 100% 이하(부부합산 120% 이하), ㉡ 일반공급(상위소득) 25% : 소득 120% 이하(부부합산 130% 이하)</li> <li>※ 일반공급(상위소득) 25% 선정시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 포함</li> </ul> </li> <li>②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소득기준 및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li> <li>㉣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재(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단,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li> <li>㉤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li> </ul> </li> </ul> </li> </ul> </li> </ul>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인증관련 제출 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해당자격		소득인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급년도 전직자	• 급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사업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지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주택전시관 비치)	* 접수장소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4.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건설량의 3% 이내 공급

구 분	59A	59A-1	59B	84A	84A-1	84B	84B-1	합 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건설량의 3%)	0	1	0	1	0	2	2	6

<b>신청자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li> <li>•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li> <li>•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연적별 예치금액 이상)</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제한이 적용되므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함.</li> </ul>
<b>당첨자 선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우선함</li> <li>•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li> <li>•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선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li> <li>•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선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선정 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 기준표를 작성도록 함 (주택전시관 비치)</li> <li>•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선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li> <li>※ 「타 분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름</li> </ul>

5.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 (계약체결 전 제출)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약서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비치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 (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청약통장 가입 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 안될 경우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 등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경우	
일반특별공급	○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한 추천명단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만 인정함(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 불가)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다자녀가구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청약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주택전시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
		○	주인등록표등본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신혼부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만 19세이상 세대원)	본인/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구비 서류 (만 19세이상 세대원)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 각서	본인/배우자	접수장소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배우자	접수장소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부양특별공급	○		노부모 가정표	본인	청약신청자 본인 점수 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만 18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제3자대리인신청사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택1)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서명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날인이 필요합니다.

## IV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b>신청자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에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지속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2호, 제26조제5항에 의거 청년자(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 성년자 포함)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li> <li>- 동일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3항및 제4조5항 의거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19.09.26.)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거주자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지역 거주자 보다 우선함.</li> </ul>
<b>청약신청 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9.09.26.)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가점제 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또한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시 재당첨 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li> <li>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시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의 변경(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은 청약부금으로 청약이 불가능하며 청약예금으로 전환필요)</li> <li>-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총액(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총액시 청약신청 가능), 지역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전입시 1순위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지역)에서 140%를 초과 청약접수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지역) 청약접수를 받지 않음)</li> <li>-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차액 총액(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총액할 경우 청약 가능)</li> </ul> </li> <li>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청약대상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 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li> <li>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위험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중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ul>

### 2. 일반공급 입주자 지속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1순위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li> <li>2)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li> <li>3)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li> <li>4)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 액 이상인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ol> </li> <li>※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하여야 함.</li> <li>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나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li> </ul>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시 추첨제 100%로 청약 접수함</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자</li> </ul>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자</li> </ul>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구분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이하	40%	60%
전용면적 85㎡초과	-	100%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 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li> <li>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가족관계증명서</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9세 이상 생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서 추가확인서류 - 만30세 미만 : 자녀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총 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특별공급 제외)

■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신청자격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li> <li>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li> <li>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다) 본인관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li> </ul> </li> <li>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li> </ul>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li> <li>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li> </ul>
부양가족 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li> <li>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li> <li>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li> </ul>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비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V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1. 일반공급 청약 신청 일정 및 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9.26.) 현재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청약신청 접수일	청약신청방법	청약접수시 유의사항
일반 공급	1순위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2019.10.02.(수) 08: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li> <li>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PC : www.kbstar.com / 모바일 : KB스타뱅킹 앱)</li> <li>금융결제원/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PC : www.ap2you.com / 모바일 : APT2you 앱)</li> </ul>	※1순위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 통장으로의 효력상실
		경상남도	2019.10.04.(금) 08:00 ~ 17:30		

※ 주택전시관 내에서는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가점제 적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적용안내,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들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신청서</li> <li>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li> <li>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li>본인확인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 </ul> </li> <li>주민등록표등본 1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li> <li>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강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결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강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ul> </li> </ul>

- 청약자의 인강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정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신청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인」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청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 /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 VI 당첨자 발표

### 1. 당첨자 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서류제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일시 : 2019.10.11.(금) 장소 : 사업주체 홈페이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 일시 : 2019.10.11.(금) · 확인방법 :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개별조회) (PC : www.ap2you.com/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모바일 : APT2you 앱)	· 일시 : 2019.10.14.(월) ~ 2019.10.18.(금) 7일간 10:00 ~ 16:00 · 장소 : 당사 주택전시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5-13)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무작위 전산추첨)함에 따라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해당 공급유형 예비입주자에게 절차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 모든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의 서류제출기간 (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해당 공급유형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계약은 취소됩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합니다.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순위,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의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사업주체는 당첨자에 한해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된 신청자격 확인서류를 확인(검증)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요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주체에게 신청자격 확인 및 당첨자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당첨자 선정 방법(일반공급 당첨자)

구분	선정 방법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합니다.(단, 만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li>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li>-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기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ul>

### 3.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li> <li>예비입주자 선정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li> <li>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홈페이지(<a href="http://jm-eileen.co.kr">http://jm-eileen.co.kr</a>)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li> <li>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2일 이내에 주택전시관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변동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통보를 못 받아서 예비입주자 공급일정에 참여 못하여도 이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li> <li>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li> <li>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됨)</li> <li>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li> <li>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계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li> <li>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li> <li>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에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사업주체의 통보로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 의 지급이 없이 원금만 환불되며, 당첨취소된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특광역시구·청약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타주택 포함)에 중복으로 청약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li> </ul>

#### 4. 인터넷 당첨자 발표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은행 홈페이지(<a href="http://www.kbstar.com">www.kbstar.com</a>)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 확인 → 주택별 조회</li> <li>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파트투유 홈페이지(<a href="http://www.ap2you.com">www.ap2you.com</a>)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 (최근10일)</li> <li>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ul>
	이용기간	2019.10.11.(금) ~ 2019.10.20.(일) (10일간)	
전화(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1→3]	ARS 서비스제공 없음(서비스 종료)
	이용기간	2019.10.11.(금) ~ 2019.10.20.(일) (10일간)	
휴대폰 모바일	대상	일반공급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19.10.11.(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한 주택청약당첨조회 서비스가 2017.6.15.부터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인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Ⅶ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1.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특별공급	2019. 10. 22. (화) ~ 2019. 10. 24. (목) (3 일간)	중산매곡 에일리의 들 주택전시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5-13)
일반공급	10:00 ~ 16:00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순위,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주택전시관에서 계약 체결 합니다.

### 2.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구비사항	비고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특별공급 포함)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		• 계약금 우통장입금 영수증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주택전시관 내 비치)	
일반공급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통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자촉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수도권 거주자로 봄)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 시, 단독세대인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주민등록표초본(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미만 기준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자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대리인 계약 시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본인 외 모두 제 3자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 1통,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조)
  -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의 주민등록번호및지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계약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여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여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적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다,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도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신청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 확인 후 부적격 문제가 치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발표일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배우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 주택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전금환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류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 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 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분양대금연체, 계약부정행위등)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속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 외국인(시민권자)은 계약전에 울산광역시에 토지 취득허가를 득한 후,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4.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건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자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5.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6. 11. 15., 2018. 12. 11.>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6.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BNK경남은행	207-0086-5243-01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본 지정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관련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2동503호 홍길동 →10205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7.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등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관련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 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나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대출신청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인지대 등)은 계약자가 부담)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건에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중도금의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8.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사의 표시는 소유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유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지상철,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LTV,DSR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시 시행자, 시공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시 시행자 및 시공자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및 이자 부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짐. 정부정책 변경등에 따라 시행자 및 시공자가 중도금 대출은행 알선 불가시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계약자 회사, 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 양도받은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 보증(부담금대출보증,사업비대출보증,조합주택시공보증,분양보증등)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 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HUG-i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

###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사전 방문토록 할 예정입니다.
- 도배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방문입니다.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 입주예정일 : 2021년 10월 예정(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창호공사

### □ 발코니 확장 및 창호공사

(단위: 원 / V.A.T 포함)

주택형 (약시표기)		59A	59A-1	59B	84A	84A-1	84B	84B-1
금 액		12,500,000	12,500,000	12,500,000	14,000,000	14,000,000	14,000,000	14,000,000
면적비고	계약금 (계약시)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잔 금 (입주시)	11,500,000	11,500,000	11,500,000	13,000,000	13,000,000	13,000,000	13,000,000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써,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별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 선택시 주택전시관과 실별구조가 다르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며 일부 사용이 제한되거나 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확장지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제품 포함)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상하부세대의 확장으로 인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바닥 천장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확장하지 아니한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및 확장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지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지와 비확장지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각종 선택형(유상, 무상)이 불가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주택전시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 발코니 확장 및 창호 공사비 납부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계좌	부산은행	113-2011-7325-03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함으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전시관 제출[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확장 시 총 공사금액으로 추후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계약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일정은 계약자 본인에게 고지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바닥재·타일·창호·가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제도가 적용된 주택입니다.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구, 타일, 창호, 가구,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주방가구 및 신발장 설치 위치와 크기는 사업승인도면에 준함)

구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
일괄선택 (개별선택 불가)	문	각 목문틀(사춤 포함), 목문상부 마감판, 마감캡, 문선, 디지털 도어록, 목문짝 (각 침실문, 욕실문, 미닫이문), 시트지, 창호철물 일체	욕실문틀 하부철, 방화문틀 및 문짝, PL창호
	바닥	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마루귀틀, 현관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 (시멘트 몰탈 일체)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에어컨 매립배관(안방, 거실)
	벽	벽지(초배지 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경량칸막이 등), 각방 온도조절기, 발코니 수전류	석고보드(단열공사), 시멘트 벽돌,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에어컨 매립배관(안방, 거실)
	천장	천정지(초배지 포함), 등락스(우물천정 포함), 반자동림(몰딩포함)	천정을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 스프링클러 배관 및 헤드, 환기설비 배관 및 디퓨저(욕실 제외)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약세사리류, 천정재(천정을 포함) 샤워부스, 욕실 디퓨저, 욕실바닥 및 벽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욕실 등기구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 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인덕션 쿡탑 전기오븐), 절수페달, 후드, 아일랜드 매립형 콘센트 벽타일, 설비수전류, 액세서리 일체, 주방TV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주방배기덕트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 및 장, 파우더장, 반침가구(불박이장, 시스템장), 수납선반, 욕실장, 펜트리	-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배전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욕실 제외) 등

※ 평형 및 타입별 품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59A	59A-1	59B	84A	84A-1	84B	84B-1
기본선택 (마이너스옵션)	19,588,000	20,035,000	19,878,000	27,120,000	27,744,000	27,279,000	27,905,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양금액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공사(확장 시 별도제공품목 시공 포함) 신청이 불가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은 유상으로 제공되는 품목으로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미확장에 따른 별도의 정산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준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에는 원상 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 후 마이너스 옵션 세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세대는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호를 지정하지 않으므로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유의사항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번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li> <li>•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li> <li>•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li> <li>•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li> <li>•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li> <li>• 타사 아파트의 마감시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시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li>•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취득신고</li> <li>-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li> <li>-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신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li> </ul> </li> <li>•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들에 있습니다.</li> </ul>
주택 전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전시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전시관 내에는 기본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선택옵션품목,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주택전시관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주택전시관 소방설비로 본 공사와 위치, 개소 등이 상이합니다.</li> <li>• 주택전시관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에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li> <li>• 주택전시관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주택전시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승인도서 (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 준합니다.</li> <li>• 주택전시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 오수 배관의 위치, 선출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시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 단지 여건사항

### ■ 단지 외부여건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전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 계획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 매곡초등학교, 매곡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교 일정에 의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공원 및 공공공지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은 허가관청 및 국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 주변 대중교통(시내버스등)의 운행시간,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아파트 단지는 도로(북측23m, 서측25m, 남측 15m,28m, 동측15m)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부담이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휴시설,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 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시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 단지 내부여건

- 면적 및 대지지분은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의 경우도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임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목적물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 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 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측벽, 발코니알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야간조명 효과, 야간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각 동의 외장부 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이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연출용 시공부본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실외기 위치에 따른 소음 및 경관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할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문주, 경비실, 주민공동시설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 받을 수 있음.
- 단지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등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1층 필로티 및 옥외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재활용 창고,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D/A(설비 환기구), 조정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위치가 변동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근린생활시설,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 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차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체계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를 통하여 간주함.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산식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주택전시관에 비치한 건축도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동측 15M 계획도로에 주차입구, 남측 15M 계획도로에 부출입구가 위치해 있으며, 보행자 출입구는 북측 23M 계획도로에 2개소, 서측 녹지 산책로에 면해서 지하 부대복리시설 출입구가 위치해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조명,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능하며,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의 차량 이동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동의 주차입구는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및 분할창호 설치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또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시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 각 동의 진입층(1층) 필로티 및 중앙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의 내 외부인에 의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 통행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명 및 조명구 식재 위치는 일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명 시설물에 따른 조명 선형이나 포장 및 조명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차주차 충전복리시설은 103동과 104동 사이 완속충전시설 2기, 급속충전시설 1기 111동 전면에 완속충전시설 3기가 지상에 설치예정이나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를 통하여 간주함.
- 각 동의 진입부(동출입구)는 지반레벨 등 여건에 따라 구조형식 및 형태, 크기 등이 상이하나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여야 함.
- 본 단지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내부에 위치하므로,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및 항공장애표시등 설치로 인한 세대 내,외부의 눈부심 발생될 수 있음.

## ■ 부대복리시설

- 작은도서관, 입주자회의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커뮤니티센터, 경비실(2개소),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3개소),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2개소) 등
  - ※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허가(사업계획) 변경 또는 입주자회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단지 내 부대시설의 내부시설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커뮤니티센터의 집기는 시공,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기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저수조 등)은 공동주택 등 각각의 용도별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 용도별 해당시설 입주민의 공동 시설물임.
- 어린이집은 103동 정면에, 경로당은 102동 배면에 각 개별동으로 설치되어있으며,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입주자회의실 등)은 107동과 108동 사이 지하층, 커뮤니티센터는 106동과 107동 사이 지하층에 설치됨으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입을 수 있음

## ■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로서 공동주택단지외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단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 (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건축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 층별구성, 입점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환기 시스템 및 공조 시스템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열기 등에 의한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 시기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음.
- 121동 근린생활시설은 북측 23M 계획도로에 면하여 개별동으로 설치되어 있고, 101동 측면, 110동 전면에 위치해 있어 일부 세대가 일조권, 조망권, 소음, 냄새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21동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 주차장에 22대(장애인주차2대 포함)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진출입동선은 아파트 차량동선과 분리되어 별도로 사용됨. 아파트 입주민은 지상의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 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및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 121동 근린생활시설은 도로와의 레벨차이로 인해 전면에 계단 및 경사로가 설치될 수 있음.

## ■ 주차공간

-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가능 높이는 2.3m이하임.
- 지하주차장은 각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도열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름.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101동, 103동, 104동, 106동, 107동, 110동, 111동 저층부 세대는 차량조명,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설계관련 주요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동별 설계 및 유의사항

10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면, 배면에 분리수거함, DA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 배면에 상가전용 주차장(단지바닥보다 1.5m위에 위치) 및 지상주차장이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측면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 배면에 주차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배치되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경비실 및 문주가 배치되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경로당 및 휴게시설이 배치되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 측면, 배면에 보행자통로 및 비상차로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지하층에 제연 환풍,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지하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북측 23m, 동측15m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야간 눈부심 현상,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ul>
102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면에 분리수거함, DA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입주민휴식공간, 배면에 경로당이 배치되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문주가 배치되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 측면 배면에 보행자통로 및 비상차로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 측면에 주차입구 및 부출입구가 배치되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지하층에 제연 환풍,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지하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동측 15m, 남측 15m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야간 눈부심 현상,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ul>

103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면, 측면에 경비실, 분리수거함, DA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지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 배면에 어린이집 및 어린이 놀이터, 주민휴게시설(광장)이 배치되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 측면 배면에 보행자도로 및 비상차로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지하층에 제연 환풍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동측 15m, 남측 15m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야간 눈부심 현상,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ul>
104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면, 측면에 분리수거함, DA가 설치되어 폐기물 분리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배면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상주차장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배치되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입주민휴식공간이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 측면 배면에 보행자도로 및 비상차로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남측 대로 3-38호선변(28m 도로)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는 일조 및 조망권 제한, 미관저해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지하층에 제연 환풍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동측 15m, 남측 28m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야간 눈부심 현상,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ul>
105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면에 분리수거함 DA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입주민휴식공간이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비상차량도로, 보행자도로가 설치되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남측 대로 3-38호선변(28m 도로)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는 일조 및 조망권 제한, 미관저해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동의 진입은 정면에 위치한 출입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배면에는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음</li> <li>• 지하층에 제연 환풍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남측 28m, 서측 25m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야간 눈부심 현상,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ul>
106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면에 분리수거함, 측면에 DA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보행자도로 및 비상차로, 배면에 산책로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배치되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동의 진입은 정면에 위치한 출입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배면에는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음</li> <li>• 측면 하부에 위치한 커뮤니티센터의 냉, 난방시 가동되는 실외기 및 보일러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가 소음, 냄새, 진동, 조망권 제한, 미관훼손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지하층에 제연 환풍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서측 25m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야간 눈부심 현상,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ul>
107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면, 측면에 분리수거함, DA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보행자도로 및 비상차로, 배면에 산책로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시설(광장)이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측면에 외부계단 및 E/V 설치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동의 진입은 정면에 위치한 출입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배면에는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음</li> <li>• 측면 하부에 위치한 커뮤니티센터 및 부대복리시설의 냉, 난방시 가동되는 실외기 및 보일러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가 소음, 냄새, 진동, 조망권 제한, 미관훼손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지하층에 제연 환풍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서측 25m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야간 눈부심 현상,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ul>
108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면에 분리수거함, DA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보행자도로 및 비상차로, 배면에 산책로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주민휴게시설(광장), 어린이놀이터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외부계단 및 E/V 설치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동의 진입은 정면에 위치한 출입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배면에는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음</li> <li>• 측면 하부에 위치한 부대복리시설의 냉, 난방시 가동되는 실외기 및 보일러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가 소음, 냄새, 진동, 조망권 제한, 미관훼손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지하층에 제연 환풍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서측 25m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야간 눈부심 현상,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ul>
109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면에 분리수거함, DA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보행자도로 및 비상차로, 배면에 산책로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어린이놀이터, 입주민 휴식공간, 보행자 출입구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동의 진입은 정면에 위치한 출입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배면에는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음</li> <li>• 지하층에 제연 환풍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서측 25m, 북측 23m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야간 눈부심 현상,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ul>
110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면에 분리수거함, DA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 측면 배면에 보행자도로 및 비상차로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어린이놀이터, 측면에 입주민 휴식공간 및 보행자 출입구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보행자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부출입구가 배치되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배치되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지하층에 제연 환풍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북측 23m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야간 눈부심 현상,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ul>
11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면에 분리수거함, DA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 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지상주차장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통학버스 주차공간이 배치되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 측면 배면에 보행자도로 및 비상차로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정면, 배면에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시설, 어린이집이 배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 눈부심,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지하층에 제연 환풍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ul>

##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가변형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시공될 예정임.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주택전시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실시공 시 세대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매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재제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람.
- 비확장 시 가구배치 및 마감이 확장세대와 상이함.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람,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분공사와 무관하며, 실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주택전시관에 단위세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은 주택전시관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와 주택전시관의 CG,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실공사시 공사여건 및 심의 인-허가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면구조상 동일한 주택형(TYPE)이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전시관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주택전시관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 일부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나, 반드시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 바람.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는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외부창호(유리포함)는 추후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천연대리석 및 화강석의 경우 자연적인 무늬로 인하여 흠집, 결, 무늬, 이색 등이 있을 수 있음.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므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상의 기본형 평면을 참고하시기 바람.
- 비확장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날개벽체 등의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샷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 고정형 가구 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도배지 마루판 등의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등의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방향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각 세대에 별도 구획된 대피공간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색상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돌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일부동의 경우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카탈로그 및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저층 석재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창호 사이지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조정 및 세부 석재 시일을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오철이 발생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금/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택전시관 가시실물로서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본 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전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시 문턱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자재 자체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석공사에 쓰이는 사용자에게 천연석재일 경우 자재의 특성상 주택전시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주택전시관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 감소될 수 있음.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전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음.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노출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공사 시 싱크대 하부 운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욕실장 뒷면은 타일 시공을 하지 않음.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냉매배관은 안방과 거실에만 적용하였음
- 전열교환기의 환기 디퓨저 위치는 변경 될수 있으며 ,세대별 실외기실 루버 또는 외부 캡크림로 공기가 순환됨.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출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103, 104, 106, 107, 108동은 특수전단벽이 적용되어 세대 평면이 모델하우스에 걸린 타입 또는 모형으로 전시된 타입과 다소 차이가 있으니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평면 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사항

-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준공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단지 내 조정,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울산시 북구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정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정의 설치 또는 교체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기본형, 확장형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향후 소방법 준수를 위한 소방설비 및 제연 시설물의 위치 및 개수 등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사양 및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전시관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정시설물, 식재, 포장 등은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에 의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의 허가 없이 주택전시관 내 무단 사진촬영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계약자일 경우라도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없음.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를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갑”과 “병”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속지(사업참여 전제조건·특약조건·도급계약일반조건)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 “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갑”은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협력업체의 선정·변경, 조합원 모집·탈퇴승인·제명·계약조건 변경 등 조합의 사업성 및 조합의 수입·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병”과 합의하여야 한다. “병”과 합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갑”이 단독으로 업무를 진행할 경우 시공사는 해당 항목에 대한 사업비 집행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손해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갑”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 매도청구 진행상황

- 당 주택건설사업부지 중 중산동 83-9(면적:41㎡), 중산동 83-12(면적:1㎡)는 [주택법22조]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사용검사 전 까지 본 도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예정으로 청약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여야 하나, 상기 미확보된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합니다.

## ■ 주택건설사업부지 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등) 관련 사항

- 본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조건 상 사업부지 외 도로(대3-38호선 및 대3-42호선)를 추가 개설하여야하며, 도로 등의 개설 지연(천재지변 등 기타 이와 비슷한 사유)으로 인하여 본 공고상 명기된 입주예정일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통보하기로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학교배치 관련 사항

- 본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 증가되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교의 경우 호계·중산학교군, 북구 학교군에 수용이 가능하나, 증가되는 초등학생의 경우 기존 중산초등학교에 배치가 불가하여 2020년 이후 추가 학교신설을 통해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이행여부)

	의 무 사 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함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의 설치함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함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함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함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 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함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함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함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함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함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원, V.A.T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더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진일기술단	㈜더베스트이앤씨	㈜더베스트이앤씨
감리금액	2,107,589,440	631,636,000	66,000,000	220,000,000

분양보증

■ 보증서 발급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2312019-101-0001600호	42,947,373,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함이다.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률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을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획을,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획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와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의를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현황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 호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	아이에스동서(주)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55-21(신천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청담동)
법인등록번호	596-82-00171	110111-0208383

### ■ 주택전시관 운영

주택전시관 위치	관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5-13</li> <li>• 전    화 : 052-256-5585</li> <li>• 운영시간 : 평일, 주말 10:00 ~ 18:00</li> <li>• 홈페이지운영안내 : <a href="http://jm-eileen.co.kr">http://jm-eileen.co.kr</a></li> </ul>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의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의사사항에 대하여는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임)  
 \* 주택전시관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어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중산매곡 에일린의 뜰 주택전시관 : 052-256-5585
------	----------------------------------